

#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원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8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김원태, 강석주, 경기문,  
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 
김규남, 김길영, 김영옥,  
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 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 
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 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 
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 
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 
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 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 
윤영희, 윤종복, 이병운,  
이상욱, 이새날, 이종태,  
임춘대, 장태용, 정준호,  
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 
허 훈, 홍국표 의원(47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장민원 확인·점검에 따른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,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 중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을 현장민원으로 정의함(안 제2조제5호)
- 나.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25조)

- 다. 현장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·점검하고 불량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26조제1항)
- 라. 평가 등을 통해 우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제2항)
- 마. 시민참여옴부즈만이 공공사업 감시·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27조제7항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##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현장민원“이란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 중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을 말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, “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”를 “필요하다고”로 한다.

제8장을 제9장으로 하고,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며, 제8장, 제25조,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8장 현장민원 지원 및 점검·평가 등

제25조(현장민원 신고활동 지원) 위원회는 자치구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관할 구역 시민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점검·신고하는 주민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‘내 지역 지킴이(시민불편살피미)’ 점검·신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관련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26조(현장민원 점검·평가 등) ① 위원회는 현장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·점검하고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

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공무원 및 우수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제27조(중전의 제25조)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제22조 및 제23조의 공공사업 감시·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제29조(중전의 제27조) 중 “제25조의 시민참여옴부즈만, 제26조”를 “제27조의 시민참여옴부즈만, 제28조”로 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현장민원과 ‘내 지역 지킴이(시민불편살피미)’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제21조(감시·평가대상) <u>위원회</u>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·평가가 <u>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</u> 인정한 사업(이하 “감시·평가대상 공공사업”이라 한다)의 발주, 입찰, 낙찰,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 등을 감시·평가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<u>현장민원</u>“이란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 중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을 말한다.</p> <p>제21조(감시·평가대상) <u>위원회</u>는 -- ----- ----- ----- <u>필요하다고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장 <u>현장민원 지원 및 점검·평가 등</u></p> <p>제25조(현장민원 신고활동 지원) <u>위원회</u>는 자치구 <u>현장민원 활성화</u>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관할 구역 시민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<u>점검·신고</u>하는 주민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‘<u>내 지역 지킴이(시민불편살피미)</u>’ <u>점검·신고</u>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관련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.</p>

<신 설>

제8장 그 밖의 사항

제25조(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)

① ~ ⑥ (생략)

<신 설>

제26조 (생략)

제27조(수당 등 지급) 제17조의 심의위원, 제25조의 시민참여옴부즈만, 제26조에 따라 감사 등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8조 ~ 제30조 (생략)

제26조(현장민원 점검·평가 등) ①

위원회는 현장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·점검하고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공무원 및 우수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제9장 그 밖의 사항

제27조(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)

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제22조 및 제23조의 공사업 감시·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

제28조 (현행 제26조와 같음)

제29조(수당 등 지급) -----  
--- 제27조의 시민참여옴부즈만,  
제28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.

제30조 ~ 제32조 (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)